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13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2. 1. 27. ~ 2. 1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(3) 비용추계서 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150원”을 “25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0원”을 “6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150원</u>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500원</u>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250원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<u>600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250원으로 인상,
전자고지&자동이체 600원으로 인상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\ 연도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| | | |
| 세입 | ○ | △ 424 | △ 530 | △ 663 | △ 829 | △ 1,036 | △ 3,482 |
| | ○ | | | | | | |
| | 소계(a) | △ 424 | △ 530 | △ 663 | △ 829 | △ 1,036 | △ 3,482 |
| 세출 | ○ | | | | | | |
| | ○ | | | | | | |
| | 소계(b) | | | | | | |
| □ 총 비용(a-b) | | △ 424 | △ 530 | △ 663 | △ 829 | △ 1,036 | △ 3,482 |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\ 연도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| | | |
| 국비 | | | | | | | |
| 시비 | 지방세수입 | △ 424 | △ 530 | △ 663 | △ 829 | △ 1,036 | △ 3,482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 |
| | 지방채 등 | | | | | | |
| 민간 | | | | | | | |
| 기타 | | | | | | | |
| 합계 | | △ 424 | △ 530 | △ 663 | △ 829 | △ 1,036 | △ 3,482 |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세무7급 박성호

II. 세액공제 조정시 상세 비용추계서

개정내용 :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

-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는 150원 ⇒ 250원(인상)
- 전자고지 & 자동이체는 500원 ⇒ 600원(인상)

○ 2021년 기준 세액공제 고지건수 : 총 3,394,112건

| 합 계 | 전자고지만 | 자동이체만 | 전자고지&자동이체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3,394,112 | 2,680,623 | 269,100 | 444,389 |

○ 산출기준

- 고지건수 : 2021년 기준 세액공제 건수 기준
- 연도별 세액공제 고지건수 증가비율 : 매년 25% 증가 가정

(단위: 천건, 백만원, %)

| 구분 | 평균 | '22 | '23 | '24 | '25 | '26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건수 | 6,963 | 4,242 | 5,303 | 6,629 | 8,286 | 10,358 |
| 증감액 | 696 | 424 | 530 | 663 | 829 | 1,036 |
| 증감율 | 25 | 25 | 25 | 25 | 25 | 25 |

○ 산출결과

- 조정 시 추가비용('21년 기준) : 339백만원(664백만원 ⇒ 1,004백만원)
[전자고지(268백만원), 자동이체(27백만원), 전자고지&자동이체(44백만원)]

- 연도별 세액공제 산출 비용

(단위: 백만원)

| 1차년도 ('22년) | 2차년도 ('23년) | 3차년도 ('24년) | 4차년도 ('25년) | 5차년도 ('26년) | 합 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424 | 530 | 663 | 829 | 1,036 | 3,482 |

※ 매년 25%씩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대상 건수 증가 가정